

#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

의안 번호	610
----------	-----

발의자 : 고흥호의원 외 5인

발의일자 : 2000. 2. 1

## 1. 제정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각각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 및 1999년 12월 31일(대통령령 제16672호)로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정례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동법 및 시행령에의거 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코져 함에 있음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『정기회』를 『정례회』로 한다.  
(안 제1조)
- 나. 종전 “매년 정기회 1회 35일” 하던 것을 “정례회는 매년 2회 35일”로 한다. (안 제2조, 제3조)
- 다. 1차 정례회는 7월 5일에 하고 2차 정례회는 12월 10일로 한다.  
단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,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(안 제4조)
- 라. 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승인, 기타 부의안건으로 하고, 2차 정례회는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 등 처리 (안 제5조)
- 마. 그외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(안 제6조)

### 3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
  - 행정사무감사 회기일수(7일이내) 및 1차 정례회 회기내 실시
-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
  - 결산서 작성기한(출납폐쇄 후 80일 이내) 및 1차 정례회 회기내 처리
- 지방자치법 제118조
  - 예산안 편성기한 :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
  - 예산안 의결기한 :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
-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(대통령령 제16694호 2000. 1. 12), 관보 제14404호(2000. 1. 12)
  - 결산서 제출기한(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제출)
- 행정자치부 운영 13130-27(2000.1. 10)호 및 경상남도 기획 13130-10039(2000. 1. 15)의 표준안 : 별첨 참조

# 고성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정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

제3조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.

제4조(집회) 영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·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0일에 집회한다.

제5조(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 한다.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정례회의 운영·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제2조제2항의 『정기회』를 『제1차 정례회』로 한다.